

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주택”이란 <u>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기타주택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기타주택은 연립,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말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2. ~ 4. (생 략)	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주택”이란 <u>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가. 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기타주택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기타주택은 연립,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말한다.</u> <u>나.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자 등”이라 한다)이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	주거목적 오피스텔 취급 근거 마련
제4조(신용정보 및 평가) ① 채무자 및 소득을 합산하는 배우자(「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」(이하 “세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결혼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출실행일 현재 신용정보조회서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u>하여서는 아</u> <u>나된다.</u> 1. ~ 3. (생 략) 4. 주택저당채권 취급 시에 공사가 <u>사</u> <u>전에</u> 양수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경우	제4조(신용정보 및 평가) ① 채무자 및 소득을 합산하는 배우자(「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」(이하 “세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결혼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출실행일 현재 신용정보조회서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u>해서는 안 된</u> <u>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주택저당채권 취급 시에 공사가 <u>미</u> <u>리</u> 양수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경우(이	표현정리 표현정리

(이하 “사전적격심사”라 한다.)에는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<u>아니한</u> 채무관계자. 다만, 「<u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</u>」에 따른 <u>전세사기피해자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자”라 한다.)의</u>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② (생략)	하 “사전적격심사”라 한다.)에는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<u>않은</u> 채무관계자. 다만, <u>전세사기피해자등의</u>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	표현정리 표현정리
제5조(주택보유수)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 이내이어야 한다. 다만,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의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u><신설></u>	제5조(주택보유수) ①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 이내이어야 한다. 다만,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의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u>②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</u>	항 신설 예외근거 마련
제7조(주택저당채권의 요건) 주택저당채권은 대출승인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<u>하여야</u> 양수할 수 있다. 1. DTI 60% 이내. 다만, 대출구조전환 또는 <u>전세사기피해자</u> 지원 목적의 경우에는 DTI 100% 이내 2. ~ 5. (생략)	제7조(주택저당채권의 요건) 주택저당채권은 대출승인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<u>해야</u> 양수할 수 있다. 1. DTI 60% 이내. 다만, 대출구조전환 또는 <u>전세사기피해자등</u> 지원 목적의 경우에는 DTI 100% 이내 2. ~ 5. (현행과 같음)	표현정리 표현정리
제9조(담보주택의 요건) 담보주택은 대출실행일 현재 다음 <u>각호의</u> 요건을 모두 충족<u>하여야 한다.</u> 1.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<u>주택</u>으로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소유일 것. 다만, 주택의 매도인이 그 주택을	제9조(담보주택의 요건) 담보주택은 대출실행일 현재 다음 <u>각 호의</u> 요건을 모두 충족<u>해야</u> 한다. 1.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<u>주택 (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)</u>으로 채무자 또는 배	표현정리 오피스텔 반영

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 2. ~ 5. (생략)	우자의 소유일 것. 다만, 주택의 매도인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 2. ~ 5. (현행과 같음)	
<u><신설></u>	<u>부칙(26)</u> <u>이 규정은 2024년 9월 0일부터 시행한다.</u>	규정 개정에 따른 부칙신설